

발간등록번호

11-1460736-000057-10

PHWR Vol 3 GL2010008 / ISSN: 2093-1212

2010년

# 성병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목 차

I. 성병관리 기본방침 .....	1
1. 목적 / 1	
2. 용어정의 / 1	
3. 기본방향 / 2	
4. 2010년 중점추진방향 / 3	
5. 성병관리체계 및 성병진료기관 / 5	
II. 사업기관별 담당 업무 .....	8
1. 중앙 / 8	
2. 시·도 / 9	
3. 보건소 / 9	
4. 성병전담진료기관 / 10	
III. 성병감시체계 운영 .....	11
1. 목적 / 11	
2. 성병감시체계 / 11	
2.1. 특수취약지역 대상 보건소 중심 감시체계운영사업 / 11	
2.2. 성병표본감시체계운영사업 / 13	

IV. 성병전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17
1. 성병간이진료소 / 17	
2. 대용성병진료소 / 18	
V. 보건교육 및 홍보 .....	22
1. 목적 / 22	
2. 기본방침 / 22	
3. 추진방향 / 22	
4. 세부추진내용 / 23	
VI. 대상별 관리 .....	24
1.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 24	
2.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 26	
3. 수시건강진단 대상자 / 27	
4. 일반관리자(비정기검진자) / 27	
VII.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29
1. 대상 / 29	
2. 발급기관 / 30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유의사항 / 30	
4. 검진유보대상 / 33	
5. 건강진단수첩제 폐지에 따른 세부관리 요령 / 34	

VIII. 성병 진단 .....	36
1. 매독 / 36	
2. 임질 / 38	
3. 비임균성요도염 / 41	
4. 클라미디아감염증 / 42	
5. 연성하감(Chancroid) / 44	
6.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 45	
7. 첨규콘딜롬(Condyloma accuminata) / 47	
8. 검사시 주의사항 / 48	
※ 참고 : 질염 / 49	
IX. 성병감염자 치료 .....	52
1. 일반인 / 52	
2.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 54	
3. 성병별 치료권장 지침 / 55	
X. 기타 행정사항 .....	58
1.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 58	
2. 성병진단시약 및 기자재 / 58	
3. 일선 보건소 현지 확인 및 지도감독 / 58	
4. 검진기피자 단속 / 59	
5. 검진 및 감염자에 대한 보호 / 59	

서 식 .....61

<제1호 서식> 성병관리사업실적표 및 작성요령 / 63

<제2호 서식> 특수취약지역 대상 성병감시체계운영사업 실적대장  
및 작성요령 / 66

부 록 .....67

1.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69

2. 관련법령 / 75

3. 성병진료기록부 / 84

4. 건강진단항목에 따른 검사료 및 건강보험 수가기준액표 / 86

5.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등 / 87

# I. 성병관리 기본방침

## 1. 목 적

성병감염자 발생예방과 성병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 2. 용어정의

- “성병”이라 함은 전염병예방법상 제3군전염병으로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 “성병전담진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소, 보건소 관할 성병진료소, 성병간이진료소, 대용성병진료소를 말한다.
- “성병건강진단대상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위생분야종사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의 건강검진대상자를 말한다.
- “건강진단결과서”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위생분야종사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건강검진대상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표본감시전염병”라 함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신고의무자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발생경향을 파악하는 전염병을 말하며,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2에 해당되는 전염병으로 제2군 전염병중 B형간염, 제3군 전염병중 성병, 인플루엔자 및 지정전염병을 말한다.

### 3. 기본방향

#### 가. 성병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 철저

- 성병감염우려자(유홍접객원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등)를 보건소에서 검진
- 정기적인 성병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철저

#### 나. 성병감시체계운영 활성화

- 보건소 중심 및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성병감시체계의 활성화 추진
- 감시체계를 통해 산출된 성병통계 자료의 정책적 활용 제고

#### 다. 성병검진에 관한 홍보 및 지도 강화

- 직·간접 홍보매체를 통해 성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급으로 성병예방과 아울러 감염자의 치료기피현상 해소
- 특히 건강진단수첩제폐지('99. 8. 29)로 인한 성병건강진단대상자들이 검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생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업소 및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홍보 및 지도 실시

#### 라. 성병감염자 치료 강화

- 성병에 감염된 자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성병전담진료기관(보건소등)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조치
- 유홍접객원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고위험집단 대상자에 대한 치료는 성병전담진료기관에서 무료치료
- 무료치료를 위한 국고지원의 점진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병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대상자에 대한 무료치료 확대
- 부족 예산은 시·도(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보건기관 내원 일반성병감염자까지 무료 치료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추진)

**마. 전문 기술인력 교육 강화**

- 성병 담당자에 대한 기술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검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발견을 향상
- 성병 예방·검진 역량강화를 위한 성병담당자의 중앙교육훈련 확대

**바. 기타**

- 성병관리사업은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성병검진사업비의 중앙지원 부족분은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충당
- 성병정기건강진단대상자의 정기검진은 비급여 대상이나 성병은 지자체 이양사업이므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확보에 주력
- 불법체류자가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인 경우 자국민 보호와 개인의 건강, 인권보호차원에서 검진을 실시하되, 건강진단결과서는 발급할 수 없음

**4. 2010년 중점추진방향**

**가. 현 좌표**

- 1999년 8월 건강진단수첩제가 폐지되고, 2004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성매매가 금지됨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검진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여성 중심의 성병검진 제도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특정직업의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성병검진제도의 지속유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성병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전염병이며, 성병에 대한 고 위험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검진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따라서 현재의 성병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측면을 정비하여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병검진체계를 정착화 하는데 원년으로 삼고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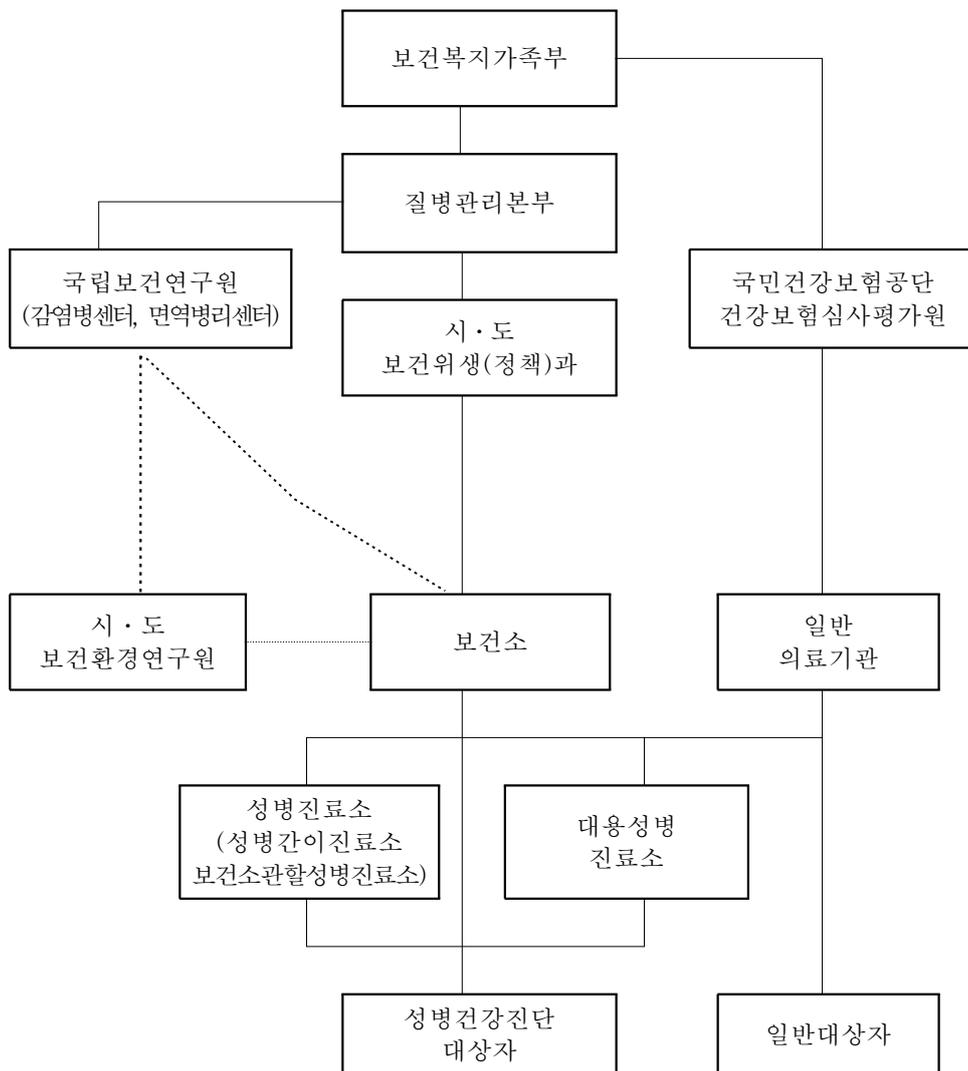
## 나. 추진방향

-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등록관리제폐지
  -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의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그간 우리부 지침에 따라 시행해오던 등록관리제를 2010년 1월부터 폐지함
  - 따라서, 성병관리사업실적표 서식에서 성병관리 건강진단 대상자수는 삭제하고, 검진건수위주로 보고
  - 등록관리를 폐지하더라도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들이 검진의무를 소홀히 않도록 홍보강화, 무료검진 및 치료확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함
  - ※ 시·도 및 시·군·구는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등이 가능한 무료로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소요예산 확보 및 지원
- 자율적인 성병건강검진제도의 정착화 기반마련
  - 성병관리사업 우수지역 및 우수사례 발굴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병예방관리프로그램 개발
  - 우수사례 및 개발사례를 적용한 시범사업실시
- 성병감시체계 및 성병전담진료기관의 효율성제고
  - 특수취약지역 대상 보건소 중심 감시체계 및 성병전담진료기관의 실효성 평가
  - 특수취약지역 대상 보건소 중심 및 표본감시체계 재정비
- 성병담당자의 전문교육 기회 확대
  - 에이즈 및 성병담당자 교육 : 질병관리본부(1회/년)
  - 성병 및 에이즈 관리과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회/년)
  - 에이즈 및 성병 일반검사과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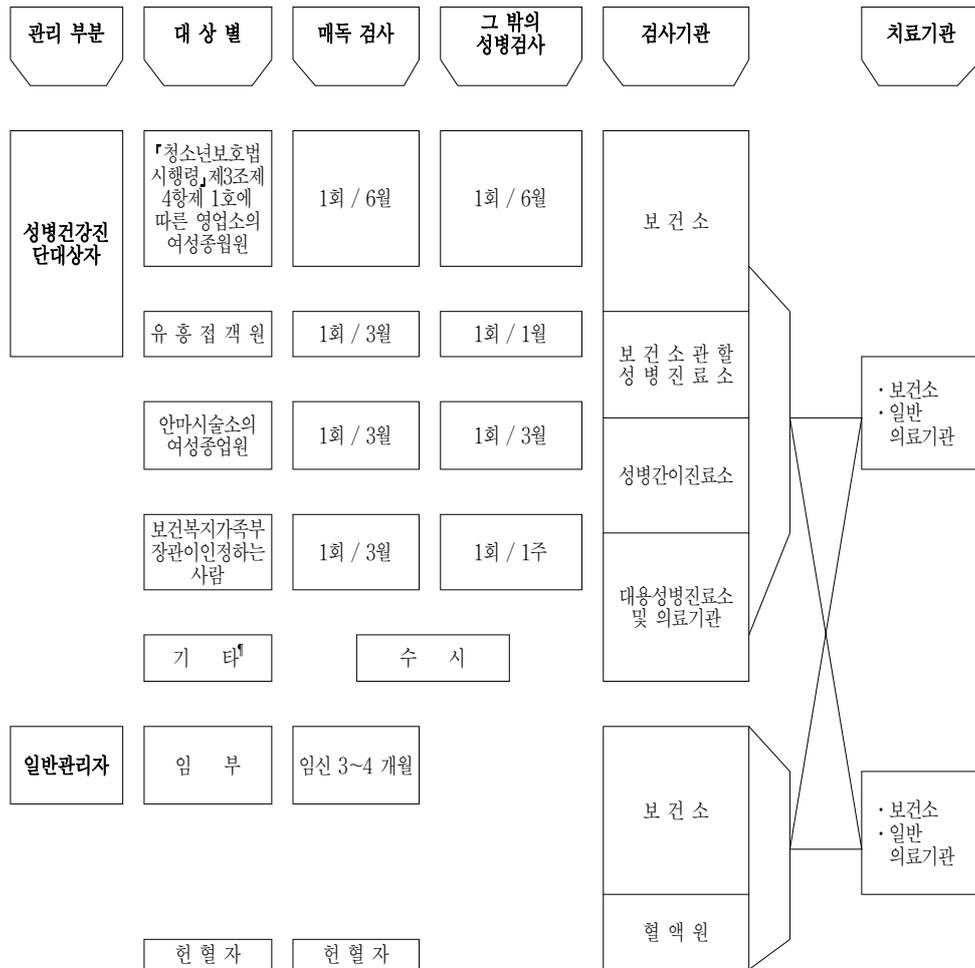
## 5. 성병관리체계 및 성병진료기관

### 가. 성병관리체계

○ 행정체계도



○ 대상별 체계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 밖의 성병 중 클라미디아감염증 검사는 1회/3주  
 ¶ 기타 : 『전염병예방법』 제8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수시건강진단대상자 등

나. 성병전담진료기관

(2009.12월 현재)

구분 시·도	합 계	보건소	보건소 관할성병 진료소	성 병 간 이 진료소	대 용 성 병 진료소	비 고
계	276	253	1	5	17	
서울	29	25	-	4	-	
부산	24	16	-	-	8	
대구	8	8	-	-	-	
인천	14	10	-	-	4	
광주	5	5	-	-	-	
대전	5	5	-	-	-	
울산	5	5	-	-	-	
경기	45	45	-	-	-	
강원	18	18	-	-	-	
충북	13	13	-	-	-	
충남	16	16	-	-	-	
전북	16	14	-	1	1	
전남	22	22	-	-	-	
경북	25	25	-	-	-	
경남	23	20	-	-	3	
제주	8	6	1	-	1	

## II. 사업기관별 담당 업무

### 1. 종 양

#### 가. 보건복지가족부

- 1)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관 질병정책과
  - 전염병 관련 법령 관리

#### 나. 질병관리본부

- 1)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과
  - 성병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관리
  - 성병관리지침 개발 및 배포
  - 시·도 성병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특수취약지역 대상 보건소 중심 성병감시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 성병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
  - 성병에 관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및 지원
- 2) 감염병센터 약제내성과 및 면역병리센터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
  - 성병관리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
  - 성병진단에 필요한 검사기준 설정 및 개정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성병진단 진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성병의 확인시험
  - 성병진단에 관한 기술보급 및 담당자훈련

3) 전염병대응센터 전염병감시과

- 성병표본감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 성병표본감시 운영
  - 성병 표본감시기관 지정·변경·취소 등 관리
  - 성병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 보고된 전염병 신고자료 수집, 분석, 배포

## 2. 시·도

### 가. 보건위생(정책)과

- 시·도 성병관리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도·감독
- 보건소 성병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성병전담진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성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성병관리 사업실적 보고

### 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성병진단용 배지 제조 기술지도(필요시 제조공급도 실시)
- 성병검사담당자 기술훈련 및 보건소 검사실 정도관리
- 보건소 등 성병전담진료기관에 대한 성병검사업무 기술지도 및 확인시험

## 3. 보건소

- 건강진단대상자의 검진
- 성병진료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성병에 관한 역학조사
- 성병예방 및 감염자 치료

- 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 지역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 특수취약지역 대상 보건소 중심 감시체계 참여 보건소의 경우 감시체계운영 및 결과보고
- 성병표본감시의료기관 및 대응성병진료소의 환자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도·감독
- 건강진단수첩제 폐지에 따라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등의 검진소홀 사례가 없도록 집중적인 홍보 및 주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 확인시험용 검체보관 및 시험의뢰
- 성병관리 사업실적 보고

#### 4. 성병전담진료기관

- 건강진단관리대상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감염자 무료치료
- 건강진단관리자 및 요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 특수취약지역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 Ⅲ. 성병감시체계 운영

### 1. 목적

성병 및 HIV에 대한 감염규모 및 변동양상을 파악하고 성병감염의 고위험군을 확인하여 성병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사업전략 및 정책수립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성병감시체계

#### 2.1. 특수취약지역 대상 보건소 중심 감시체계 운영사업

##### 가. 사업대상

- 대상자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유흥접객원 및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 대상질환 : STI(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및 H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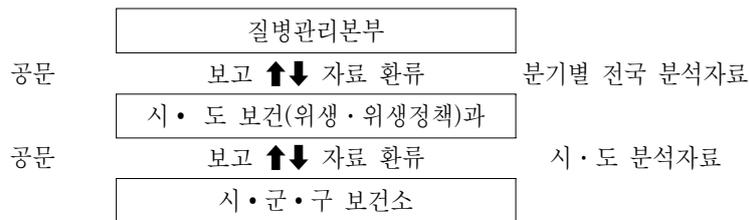
##### 나. 참여기관(전국 36개 보건소)

- 서울(7) :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남구, 광진구
- 부산(3) : 서구, 진구, 해운대구
- 대구(2) : 중구, 달서구
- 인천(1) : 남구
- 대전(2) : 동구, 서구
- 경기(8) : 수원시 팔달구, 파주시, 동두천시, 평택시, 고양시 일산 서구, 부천시 원미구, 안산시 단원구, 양주시
- 강원(4) :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 전북(2) : 군산시, 전주시
- 전남(2) : 여주시, 순천시
- 경북(2) : 경주시, 포항시 북구
- 경남(2) : 마산시, 진주시
- 제주(1) : 제주시

#### 다. 보고체계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매분기별 익월 15일까지 성병관리체계운영사업(제2호서식) 보고



#### 라. 기관별 수행업무

##### 1) 질병관리본부

- STI/HIV감시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 성병·에이즈 관련 교육·홍보자료 개발 및 배포
- 참여보건소 인력의 교육·훈련, 지도·감독
- 전체 감시자료 수집, 분석, 결과 배포
- 사업평가 및 결과환류

##### 2) 시·도

-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검진결과 및 교육·홍보 실적 통계분석 및 보고
-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성병·에이즈 예방교육 홍보를 위한 방안 모색
-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의 성병·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감시대상 보건소 지도 점검 및 사업평가

3) 보건소

-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결과 및 교육·홍보 실적 보고
- 건강진단 대상자의 성병·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콘돔 사용 교육 포함)
- 건강진단 대상자의 HIV 검사를 위한 혈청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
- 감시자료 수집, 분석하여 사업에 활용
- 사업평가

2.2. 성병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세부사항은 ‘전염병 감시 및 보고지침’을 따름)

가. 사업대상

- 대상자 : 보건소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성병진단을 받은 자
- 대상질환 : 매독, 비임균성요도염,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임질, 침구콘딜롬 및 클라미디아감염증

질 병 명	신고범위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매 독*	○	×
비임균성요도염**	○	○
성기단순포진	○	○
연성하감	○	×
임 질	○	○
침구콘딜롬	○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 매독 신고범위 : 1기·2기 매독, 선천성 매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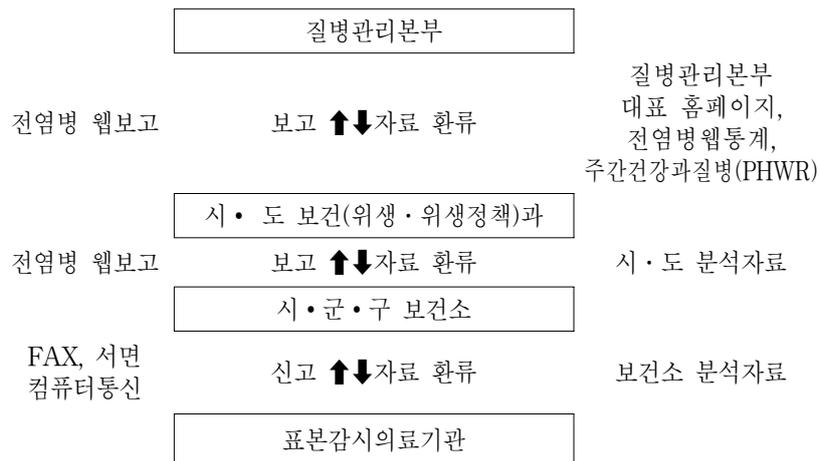
\*\* 비임균성요도염은 남자에 한해 보건소만 신고함

## 나. 참여기관

- 대학병원 (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 시·군·구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2개소
  - ※ 인구 20만미만의 시·군은 보건소만 지정
  - ※ 민간의료기관은 가능한 피부과, 비뇨기과 중 1개, 산부인과 1개 지정

## 다. 신고·보고체계

- 표본감시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



## 라. 기관별 업무

- 1) 표본감시의료기관
  - 신고시기 : 7일 이내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한 또는 의뢰한 경우 : 검사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하지 않은 경우 : <의사환자>로 임상적 진단을 한 후 7일 이내

- 신고방법 : 매주(화)까지 서면, Fax 또는 컴퓨터통신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서식에 따라 해당 보건소로 신고

2) 보건소

- 부서별 역할

부서	담당자	역할
진료실	관리의사 간호사	성병환자 및 의사환자의 진료 주 1회 신고 서식 작성
검사실	검사담당자	성병진단 검사
전염병 담당부서	전염병전담요원	임상표본감시 결과보고 자료분석 및 환류

- 담당자 역할

- 표본감시자료수집 : 주단위로 신고자료 수집
- 시·도 보고 : 매주 화요일, 전염병 웹보고(<http://nids.cdc.go.kr>) 이용
- 표본감시 결과분석 및 환류
  - 분석 및 환류주기 : 주1회
  - 환류대상 : 진료실, 관내 표본감시의료기관 등
  - 분석내용 : 질환별 환자수(성, 연령별)
  - 환류방법 : 전염병웹통계, 주간건강과 질병(PHWR)

3) 시·도

-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 보고내용 적절성 검토
- 보고시기 : 매주 수요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주1회)
- 보고방법 : 전염병웹보고(<http://nids.cdc.go.kr>)

- 표본감시자료분석 및 결과환류
  - 분석내용 : 시·군·구별 성병환자수(성, 연령별)
  - 분석방법 : 전염병웹통계 자료 이용
  - 표본감시 결과환류
    - 환류주기 : 주1회
    - 환류대상 : 시·군·구 보건소 등

4) 질병관리본부

- 성병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 성병 통계 작성 및 제공

## IV. 성병전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1. 성병간이진료소

#### 가. 목적

- 성병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많은 특수 취약지역에 성병간이진료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편의를 제공하고 성병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설치장소 및 시설규모

- 1) 설치장소 : 성병감염 우려가 많은 유흥가동 특수취약지역
- 2) 시설규모 : 검진 및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2001. 12월 기준 평균시설규모 : 22.5평)

#### 다. 설치 및 관리운영

- 1) 시설임차 및 설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책임관리
- 2) 전담기관 지정운영
  - 운영주체 : 보건소
  - 기술지도 : 보건환경연구원
  - 협조 :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 주요업무
    - 성병검진 및 치료
    - 예방교육 및 홍보

## 라. 성병전담자 배치 및 임무

### 1) 공중보건의 활용

- 공중보건의에게 성병검진에 관한 업무를 교육시켜 성병간이진료소에 성병 검진 및 치료업무를 전담토록 배치
-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지 못한 시·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관리의사 및 관할 시·군·구 성병전문(담당)의사 등을 활용

### 2) 임 무

- 성병에 대한 건강검진
- 성병검진결과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완치토록 유도
- 성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에 관한 사항을 상담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

## 마. 기 타

- 보건소관할 성병진료소 및 성병간이진료소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책임 하에 정비·운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성병간이진료소의 소재지, 임대차 계약 등 변동이 있을 시는 질병관리본부장(에이즈·결핵관리과)에게 보고

## 2. 대응성병진료소

### 가. 목 적

성병을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그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개할 우려가 비교적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함

## 나. 근거법

- 전염병예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위생분야중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6조 및 제7조

## 다. 기본방침

- 정기건강진단 실시로 성병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
- 검진 및 치료비 실비부담
- 전염병 환자의 발생보고 및 신고체계 확립
- 보건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라. 주요업무

- 성병 및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진료
-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발생보고 및 신고
- 지역주민에 대한 성병 및 보건교육
- 건강진단사업 실적보고

## 마. 지정 및 활용

### 1) 지정대상 및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병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다음 기준을 갖춘 병·의원을 대용성병진료소로 지정·활용

- 지정설치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1. 지정대상	○ 제1,2차 의료기관 - 가능한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병·의원을 지정 (성병간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지정 제외)
2. 시 설	○ 검사실 : 9㎡ 이상                      ○ 진료실 및 대기실 등
3. 장 비	○ 칸막이, 진찰대, 절경, 고압멸균기, 현미경, 배양기, 냉장고, 진탕기, 캔들자, 원심분리기, 천평, 염색대, 슬라이드건조기 전기콘로, pH 메타기, 진찰용전기스탠드, 드레싱카, 썬크대, 가위, 핀셋 등
4. 기 재	○ 백금이, 면봉, 삼각플라스크(30ml, 500ml, 1,000ml), 실린더(눈금 100ml), 파이펫(5ml, 10ml), 슬라이드글라스, 살레, 시험관 등
5. 인 력	○ 임상병리사 면허증소지자 확보
6. 주요임무	○ 성병검진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관한 사항
7. 기 타	○ 그람염색 시약 일체

※ 검사 및 치료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2) 지정원칙

- 대응성병진료소는 성병건강진단을 전담하는 것을 원칙
-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선별 지정
- 검진대상자의 적정수준과 지역간 균형을 유지
- 지정기간은 각 시·도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정하되 지정서 이면에 지정 취소사유와 준수사항을 정하여 위반 시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지정

3) 지정취소

- 건강진단 검진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 미달
- 부정 진료 및 검사료 과다징수
- 검진대상자 이용 실적 저조 또는 운영 부실
- 실적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 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1)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성병검진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대상자등에 대한 홍보·지도 사항
  - 기관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2) 실시 시기
  - 수시점검 : 필요시
  - 정기점검 : 연2회  
시장·군수(보건소장) : 상반기, 하반기
  - 정기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 상반기 실적 : 7월 20일 까지
    - 하반기 실적 : 익년 1월 20일 까지

## 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의 업무지원

- 1)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중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교육자료 및 홍보물, 관리지침 등 배포
  
-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 성병진단시약 및 기자재 등 지원
  - 건강진단 업무 및 성병검진에 관한 기술지도 및 치료비 지원
  - 홍보물, 사업실적표 등 필요한 자료 및 서식 배포

## V. 보건교육 및 홍보

### 1. 목적

성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성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여 자발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며, 관련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병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고자함

### 2. 기본방침

- 가. 건전하고 올바른 성의식 확립
- 나. 성행위 감염증에 대한 대비책
- 다. 성병의 감염경로, 증상, 위해, 치료법 등 교육·홍보
- 라. 임의 매약치료에 따른 약제 내성균 증가 예방
- 마. 입원치료 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종별에 따르는 급여
- 바. 건강진단대상자인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및 치료

### 3. 추진방향

- 성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전에 주의하면 감염되지 않고, 감염되었다 해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로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질병임을 주지
- 시·도 및 보건소에서는 관할 구역 내 중점 홍보 대상계층을 파악하고 대상자에 따른 적합한 홍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성병에 관한 이해 부족이나 무지로 인하여 무료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
- 진료절차의 복잡성이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성병진료기관의 관계 의료인에게 지도·교육 실시

#### 4. 세부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관련부서 및 기관
교육·홍보 자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지식, 성병 등에 관한 교육·홍보자료</li> <li>○ 교육·홍보용 VTR 테이프</li> <li>○ 성병 교육·홍보용 책자</li> <li>○ 홍보용 팸플릿</li> <li>○ 진료 안내서 등</li> </ul>	질병관리본부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교육</li> <li>○ 군인, 예비군, 민방위대원, 전경 등 교육</li> </ul>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근로자 교육</li> </ul>	노동부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위생분야 종사자등 교육</li> <li>○ 노인성병 예방교육</li> <li>○ 지역사회 일반주민 교육</li> </ul>	시·군·구 보건소, 관련단체
조사 및 연구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병관리의 실태조사</li> <li>○ 다양한 교육, 홍보전략 개발 연구 등</li> </ul>	질병관리본부

## VI. 대상별 관리

### 1.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 가. 대 상

-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한 자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의 여성종업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 ※ 별표 1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중 4.는
  - 시·군·구 지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보건소장이 파악·확인한 대상자로 함

#### 나. 검진 및 관리기관

- 검진
  - 성병전담진료기관(보건소 등)
  - 일반 의료기관
- 관리기관
  - 성병전담진료기관(보건소 등)

#### 다. 진단항목 및 주기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성병 건강진단대상자별 검사항목 및 횟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주

**라. 감염자 조치**

- 성병에 감염된 자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성병전담진료기관(보건소등)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조치
- 감염인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
-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격려
- 성병전담진료기관에서의 치료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체확보예산을 활용하여 치료

## 2.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 가. 대 상

-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자.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나. 검진기관

- 보건소, 일반 의료기관 등

### 다. 진단항목 및 검진횟수

-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기 건강진단대상자의 진단항목 및 주기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한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 3. 수시건강진단

#### 가. 대 상

-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동 규칙 제5조 예) 교도소 수용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나. 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등

### 4. 일반관리자(비정기검진자)

#### 가. 대 상

- 헌혈자
  - 각급 혈액원의 공혈자 중에서 혈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봉함엽서에 동 내용을 기재, 통보하여 성병검진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고 감염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임신부
  - 임신부가 성병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성병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시킴으로써 태아감염예방

## 나. 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등

## 다. 진단항목

- 매독혈청 검사
  -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신부(임신3~4개월)의 혈액을 채취하여 VDRL 및 RPR 검사법으로 매독의 감염여부를 판정하며 판정시 문진 및 임상 증상고려

## 라. 감염자 조치

- 성병에 감염된 자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성병전담진료기관(보건소등)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조치
- 감염인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
-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격려
- 매독 감염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추적하여 매독혈청 검사실시 및 유도

## VII.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1. 대 상

#### 가.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다. 수시건강진단

-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동 규칙 제5조)

## 2. 발급기관

- 보건소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보건소, 병·의원 등)은 피검자에게 기관자체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
- 건강진단결과서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건강진단기관명, 전화번호, 피검자인적사항, 건강진단일 등 소정항목을 기입
- 검사결과 이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전염병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검사결과 이상 발견 시 발급을 보류하고 치료완료 후 발급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가 건강진단을 신청할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하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되 건강진단결과서의 우측상단에 적색의 고무인으로서 **【발급기준일 미성년자】** 날인
  - ※ 청소년의 건강진단 시 부모 동의서 첨부제 폐지(2006.지침개정)
- 단,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 종업원 중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요구 시 영업장내에서 주로 다류를 조제·판매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병건강진단을 제외한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 후 발급
- 청소년 건강진단 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취업하지 않도록 동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 건강진단결과서 교부는 위생업무 지도·감시 수행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아울러 건강진단 대상자들에게 선의의 불편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기본취지이므로 종전의 건강진단수첩제와 유사한 형태로 확대·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 일부 일선 보건소에서 폐지된 종전의 건강진단수첩제와 현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민간인 또는 대외기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자체교육 및 홍보를 실시

## 4. 검진유보대상

### 가. 성병건강진단유보 대상자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라도 성병의 매개와 실질적으로 무관하다고 보건소장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성병감염 우려가 없는 종사자는 성병검진을 유보 할 수 있음
- 예) 관광호텔 내 커피숍 및 유흥주점에서 단순히 식음료의 주문을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여직원, 50세 이상의 고령자 등
- 판단기준 : 관할 보건소장 및 검진 의사의 판단, 주민등록증 등

### 나. 임신부 흉부엑스선 촬영 유보

- 건강진단 검진항목 중 결핵 이환 유무를 판독하기 위해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하고 있는 대상자 중 임신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흉부엑스선 촬영을 유보하고 검진항목의 결핵란에 “임신중”으로 표기

### 다. 타법에 의하여 건강진단항목이 중복될 경우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같음 다만, 동 건강진단규칙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항목 및 회수는 별표에 따라 당해 건강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다음 재검진일자를 명기하고 검진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일시 유보

### 라. 흉부엑스선 중복촬영 유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시 중복되는 검진항목 중 흉부엑스선 촬영은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촬영일로부터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때 재촬영하도록 그 일자를 명기하고 일시 유보

## 5. 건강진단수첩제 폐지에 따른 세부관리 요령

### 가. 중점사항

- 건강진단 대상자의 지속적 검진·치료 실시
- 건강진단 대상자들의 자율적 검진의무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보고 및 신고체계 강화

### 나. 세부관리 요령

#### 1) 검진 및 치료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료

#### 2) 보고 및 신고

-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전염병예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성병표본감시의료기관 및 대응성병진료소는 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 3) 홍보·교육

- 건강진단수첩제 폐지로 검진의무도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 지역사회 관련단체 적극 활용·홍보
  - 유흥업소, 식품위생업 등을 중점 홍보
- 특히 각 시·도 및 보건소는 건강진단 실시기관이 반드시 피검자에게 소정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검진결과 감염 시 본인에게 비밀이유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4) 관계기관 협조

-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소장은 위생감시 업무 관장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검진대상자들이 검진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홍보 실시
- 위생담당부서는 위생감시 업무수행결과 건강진단 미이행과 관련하여 적발된 내용을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되도록 협조
- 시·도지사는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자료(전염병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자료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요청하여 일선 시·군·구 보건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

## Ⅷ. 성병 진단

### 1. 매 독

#### 1) 정의

트레포네마 매독균(*Treponema pallidum*)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질환

####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으로 전파됨
- 잠복기 : 10일 내지 3개월, 평균3주
- 임상증상
  - ① 1기매독 : 경성하감(chancre)이 특징적 병변으로,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없는 구진이나 궤양이 발생하여 2주내지 6주 후에 자연소실 됨
  - ② 2기매독
    - 감염 6주 내지 6개월 후에 발생함
    -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반점, 구진, 농포성 매독진, 편평콘딜롬), 림프절종대 등을 보임
  - ③ 3기매독
    - 고무종(gumma) : 피부, 뼈, 간등을 침범함
    - 심혈관매독 : 주로 상행 대동맥을 침범함
    - 신경매독 : 무증상 매독, 뇌막혈관 매독, 척수로, 진행마비 등을 보임
  - ④ 잠복매독 : 임상증상과 전염성이 없는 시기
    - 조기 잠복 매독 : 감염후 1년 이내의 시기로 감염성이 높음
    - 후기 잠복 매독 : 감염후 1년이 지난 시기임

## ⑤ 선천성매독

- 대개 임신4개월 후에 감염이 발생함
- 조기 선천성 매독 : 생후2년 내에 발병하며, 성인의 2기 매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후기 선천성 매독 : 생후2년 후에 발병하며 수포와 반문상 구진을 포함하는 피부병변, 안창코, 신장염, 복수, 난청, 관절염 등이 생김

## 가. 검사방법

## 1) 현미경 진단법

암시야 현미경으로 환부에서 매독균을 관찰하거나 검체를 슬라이드에 고정 후 매독균의 항체가 붙어 있는 형광체를 이용하여 관찰

## 2) 혈청학적 진단법

매독균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항원항체 반응에서 생긴 항체를 검출하여 간접적으로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

## ① 비매독항원시험법

대표적인 방법으로 VDRL(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과 RPR(Rapid plasma reagin)법이 있으며 선별검사와 치료효과 판정에 유용

## ② 매독항원시험법

매독균을 항원으로 사용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TPHA(treponema pallidum hemaagglutination assay)와 TPPA(treponema pallidum particle agglutination) 및 FTA-ABS(fluorescent treponemal antibody absorption)가 확진에 유용

## 나. 진단기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매독으로 진단

- 피부 병변에서 암시야 현미경 또는 직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관찰하여 매독균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
- 문진 및 임상증상에 부합하며 혈청학적 진단에서 양성인 경우

## 다. 관련 조치 사항

- 혈청학적 진단법에 의한 양성의 경우 매독정량 검사치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치료받은 자가 양성반응에 의해 다시 치료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치료 완료 6, 12개월 후 임상 및 혈청검사 시행
- 매독 치유 여부는 비매독항원시험법(VDRL or RPR)역가 감소 및 임상증세와 과거력 등에 기초하여 판정
- 치료 6개월 후 역가가 처음의 4분의 1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4배 이상 증가하면 치료실패 의심
- 치유 또는 재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IgM 항체가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2. 임 질

### 1) 정의

임균(*Neisseria gonorrhoeae*)감염에 의하여 주로 요도염이나 자궁 경부염등을 일으키는 질환

###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 2일 내지 7일
- 임상증상
  - 남성 : 요도염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시 통증, 요도입구 발적 등)
  - 여성 : 종종 무증상,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뇨시 통증, 질분비물 증가, 비정상적 월경출혈, 항문직장 불편감등)
- 합병증
  - 여성 : 자궁내막염, 난관염, 복막염, 바톨린선염 등
  - 남성 : 요도주위 농양, 부고환염 등
  - 임균혈증 : 관절염, 피부염, 심내막염, 수막염, 심근막염, 간염 등의 전신 증상

## 가. 검사방법

### 1) 검체 채취

- 여성 : 자궁경부 가검물 채취시 반드시 질경을 사용하여 멸균된 면봉을 자궁경관 내 약 1.5cm 깊이에서 수 초 동안 회전시켜 분비물을 흡수
- 남성 : 요도의 분비물이나 요도에서 채취요도 2~3cm 깊이에서 가는 면봉 등으로 부드럽게 점액을 긁어서 채취
- 채취된 가검물은 즉시 검사에 사용

### 2) 검사법

- 직접 도말 및 현미경 검사
  - 깨끗한 슬라이드 글라스 상에 세포가 깨어지지 않도록 가검물을 부드럽게 굴러 얇게 도말, 건조시킨 후 그람염색하여 현미경상에서 세포내 그람 음성 쌍구균을 관찰
  - 남성 요도 가검물의 경우에는 도말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
  - 여성은 자궁경부 도말상에는 형태가 비슷한 다른 균이 존재할 수 있어 도말검사로는 추정 진단만 가능하며, 정확한 검사실 진단을 위해서는 배양검사 실시

- 배양검사
  - TM 배지상에 접종하여 2일간 관찰하여 배양된 균이 임균과 유사할 경우 균집락, 그람염색시험, oxidase 시험을 실시하여 임균 여부 판정
- 핵산증폭법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LCR(ligase chain reaction), SDA(strand displacement amplification)법 등이 있으며, 면봉으로 채취한 자궁경부 가검물과 소변 모두 검체로 사용가능
  - 민감한 검사방법이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한 위양성에 주의해야 하며, 증폭확인을 위한 amplification control을 사용
  - 치료완료 후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로 사용될 경우는 치료완료 3주 후에 검사

#### 나. 진단 기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임질로 진단

- 임상 검체에서 그람염색 음성, oxidase 양성 쌍구균을 분리 배양한 경우
- 임상 검체에서 항원이나 핵산을 검출하여 임질균의 존재를 증명한 경우
- 남성의 요도 도말검사에서 세포내에 그람염색 음성 쌍구균을 관찰한 경우

#### 다. 관련 조치사항

- 임질로 판정된 경우 관리의사의 지도하에 성병치료 표준처방전을 참조하여 이를 적절히 치료
- 분리임균의 확인 및 항생제 내성검사가 필요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3. 비임균성요도염

#### 1) 정의

임균이외의 병원성 미생물 감염에 의하여 생기는 요도염

#### 2) 임상적 특징

- 전과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 2주 내지 3주
- 임상증상
  - 배뇨곤란 : 빈뇨, 배뇨통 등
  - 농 및 점액 농성 요도분비물이 나옴
  - 요도불쾌감, 요도 소양증이 나타나며 무증상 감염도 많음
- 합병증 : 급성 출혈성 방광염, 전립선염, 정낭염, 부고환염, 요도협착 등

#### 3) 검사기준

- 임균이 분리되지 않고 요도를 긁어 채취한 가검물의 그람염색 도말검사시 1,000배 배율에서 5개 이상의 다핵형 염증세포(PMNs)가 관찰된 경우
- 소변 검사시 4시간 (불가피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함) 이상 참았다가 소변을 받고 이를 원심 분리하여 얻은 가검물을 400배 시야로 5곳 이상 관찰하여 다핵형 염증세포가 시야당 평균 15개 이상일 경우

## 4. 클라미디아감염증

### 1) 정의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감염에 의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등의 성기부위 질환

### 2) 임상적 특징

- 전과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 1주 내지 3주
- 임상증상
  - 임균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lymphogranuloma venereum) :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 합병증
  - ① 국소합병증
    - 남자 : 부고환염
    - 여자 : 점액농성 자궁경부염, 급성난관염, 바톨린선염, 간주위염(perihepatitis), 골반염증질환, 불임등
  - ② 전신합병증 : Reiter씨 증후군(관절염, 결막염, 요도염)

### 가. 검사방법

#### 1) 검체 채취

-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 가검물 채취 시 반드시 질경을 사용하여 멸균된 면봉으로 먼저 자궁경부에 분비물을 깨끗이 닦아낸 후 또 다른 면봉을 자궁경관 안으로 삽입해 벽면에 대고 10초 정도 회전시킨 후 질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빼냄

## 2) 검사법

- 원인균인 *Chlamydia trachomatis*를 세포배양법에 의해 분리배양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나 까다롭고 소요 기간이 길어 진단에 흔히 사용되지는 않음
- 비배양 검사법으로 직접 검체를 김자염색하여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도나 자궁경부 검체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눈 감염 시에는 유용한 진단법임
- 기타 주요 외막 단백질의 종특이적 항원에 대한 직접형광항체법은 신속하지만 관찰에 많은 경험을 요구함
- 일반적으로, 임상검체에서 클라미디아 검출에는 효소면역측정법(EIA)이나 30분내에 신속검출이 가능한 rapid 분석법을 사용함
- 핵산증폭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한 핵산증폭 검사법이 권장되며 이 경우 소변 검체도 검사 가능함

## 나. 진단 기준

다음에 해당될 경우 클라미디아감염증으로 진단

- 배양에 의해 *Chlamydia trachomatis*를 분리한 경우
- 자궁경부 가검물 등 임상검체에서 특이 항원이나 핵산을 검출할 경우

## 다. 관련 조치사항

- 클라미디아감염증으로 진단된 경우 관리의사의 지도하에 다른 성병과의 중복감염 여부를 고려하여 성병치료 표준처방전을 참조하여 적절히 치료
- 치료 후 완치여부는 위양성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3주 경과 후 실시하는 것이 좋음

## 5. 연성하감(Chancroid)

### 1) 정의

헤모필루스 두크레이균(*Hemophilus ducrei*)감염에 의한 성기나 회음부의 통증성 궤양성 질환

### 2) 임상적 특징

- 전과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잠복기 : 1일 내지 35일, 통상 4일 내지 10일
- 임상증상
  - ① 성기궤양
    - 붉은 구진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농포로 진행한 후 농포가 터져 통증성 궤양을 형성하는데, 전형적인 궤양은 지름1cm 내지 2cm로 경계가 뚜렷함
    - 남성의 경우 음경의 포피, 음경귀두관, 음경 등, 여성의 경우 음순, 질입구 항문주위 등에 주로 궤양이 분포함
  - ② 부보(buboes)
    - 서혜부 림프절염은 남성환자의 1/3, 여성환자는 그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침범된 림프절이 액화과정을 거쳐 부보로 진행되고 저절로 터져서 농이 흘러나옴
    - 성기궤양이 나타난 후 1주내지 2주일이 지나서 발생하며 종종 심한 통증을 동반함

### 가. 검사방법

#### 1) 검체 채취

- 궤양부위를 마른 가제나 면봉으로 닦고 각피를 제거하고 배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섬유성분의 면봉으로 삼출물을 채취

## 2) 검사법

- 통상 균 분리 및 확인에 의해 진단
  - 분리용 배지로 1% IsoVitale X가 첨가된 gonococcal (GC) 또는 Mueller-Hinton 초코릿 한천배지를 사용
  - 접종 후 5% CO<sub>2</sub> 조건에서 32~34℃로 2~5일간 배양
  - Oxidase 양성, nitrate 환원, alkaline phosphatase 양성, hemin(X factor) 요구성, catalase, indole, urea 음성 등 생화학적 특성으로 동정
- 임상검체를 그람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전형적인 작은 연쇄상이나 물고기 무리처럼 보이는 그람 음성 간균을 관찰하는 비배양검사법이 있으나 낮은 민감도와 특이도 때문에 진단에 권장되지는 않으며 일부 비배양 항원과 핵산 검출 방법도 개발되어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음

## 나. 진단기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연성하감으로 진단

- 임상검체에서 원인균인 *Haemophilus ducreyi*를 분리한 경우

## 6.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 1) 정의

제2형의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II)감염에 의해 성기 부위의 수포성 질환

## 2)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임상증상
  - ① 초기감염 : 성기 부위에 수포형성 후 궤양을 형성(2주내지 3주내로 자연치유)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② 잠복감염 : 초기감염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면서 평생 동안 잠복 감염을 유발함
  - ③ 재발성 감염 : 신경절에 잠복하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분비함

## 가. 검사방법

### 1) 검체 채취

- 혈청학적 검사를 위해 채혈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바이러스 분리, 항원검사,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병변부 수포액이나 궤양 부위의 도찰물을 바이러스 운송배지에 넣어 실험 시까지 4℃에 보관하고 48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70℃에서 보관

### 2) 검사법

-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검사외에 간접형광항체법(IFA), 효소면역측정법(EIA)에 의한 항원검사법, EIA에 의한 항체검사법과 PCR 등 유전자 검사법이 사용됨

## 나. 진단기준

- 환자 : 성기단순포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혈청학적 항체 양성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기단순포진임이 의심되거나 검사방법에 의하여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다. 관련 조치사항

- 성기단순포진으로 진단된 경우 관리의사의 처방전을 참조하여 적절히 치료
- 신생아, 습진이 있거나 화상을 입은 소아, 면역저하자과 접촉금지
- 성기단순포진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7. 첨규콘딜롬(Condylooma accuminata)

### 1) 정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감염에 의한 외음부에 생기는 사마귀성 질환

### 2) 임상적 특징

- 전과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잠 복 기 : 2개월 내지 3개월
- 임상증상 : 내외음부, 회음부, 항문 주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융기된 병변이 특징적임

### 가. 검사방법

#### 1) 검체 채취

- 병변부위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여 냉동보관 또는 10% 포르말린 등의 고정액에 보관하였다가 실험에 사용

2) 검사법

- 조직검사, 세포질 검사에서 조직 병리학적 변화를 확인하거나 조직검체로부터 PCR 등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하여 원인 병원체 유전자를 검출

**나. 진단기준**

- 환자 : 침구콘딜롬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조직)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침구콘딜롬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다. 관련 조치사항**

- 침구콘딜롬은 조기 발견 후 외과적 수술에 의한 치료가 가능
- 여성들은 정기적인 Pap smear 검사를 권장함
- 침구콘딜롬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조직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8. 검사 시 주의사항**

- 검사 시에는 실험복 및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며 주사기, 주사침은 찢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
- 성병진단을 위하여 채취한 가검물이나 검사 완료된 배지는 반드시 소각하거나 멸균처리

## ※ 참고 : 질 염

질의 감염증은 보통 질의 분비물과 가려움 같은 증상을 나타내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음. 질분비물이 많아지는 가장 흔한 원인 세가지는 세균성 질증, 트리코모나스 질염, 칸디다 외음부-질염 임

### 가. 세균성 질증

- 세균성 질증(bacterial vaginosis, BV)은 정상적으로 질내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유산간균이 없어지고 대신에 혐기성균이 번성한 상태
- 질분비물 또는 악취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환자의 50%에서는 무증상

#### 1) 진단

- 임상적으로 다음 중 세가지가 있으면 세균성 질증으로 진단
  - 백색 균질성 비염증성 분비물
  - 현미경 검사상 clue cell 보임
  - 질분비물의 pH가 4.5 보다 높음
  - 10% KOH를 질분비물에 첨가시 생선 비린내(whiff test 양성)
- Gram 염색상으로는 세균성 질증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질세균총의 구성 비율의 변화를 보고 진단 (유산간균의 소멸과 혐기성균의 번성)

#### 2) 치료

- Metronidazole 500mg 1일 2회 7일간 복용
  - Metronidazole gel 0.75% 1일 1회 5g 5일간 질내 삽입
  - Clindamycin 2% 크림 5g씩 취침 전에 7일간 질내 삽입
- ※주의 : metronidazole 투약 중 또는 투약 24시간 내에는 금주

## 나. 트리코모나스 질염

- *Trichomonas vaginalis*라는 원충에 의하여 생김
  - 남자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없으나 일부에서는 비임균성요도염이 생김
  - 여자들에게서는 악취가 나는 황록색의 분비물과 외음부의 가려움증이 특징이지만, 일부에서는 증상이 미약하거나 아주 없는 경우도 있음

### 1) 진단

- 생리식염수 한두 방울에 질분비물을 섞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움직이고 있는 트리코모나스를 확인하면 됨

### 2) 치료

- Metronidazole 2g 1회 복용(또는 Metronidazole 500mg 1일 2회 7일간 복용 또는 Tinidazole 2g 1회 복용)
- 완치율은 90-95% 정도인데, 성 파트너를 같이 치료하면 이보다 더 높일 수 있으며 완치될 때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함

## 다. 칸디다 외음부-질염

- 85-95%가 *Candida albicans*에 의하여 생기며 나머지는 *C. glabrata*와 *C. tropicalis* 등에 의하여 생김
- 전형적인 증상은 가려움증과 질분비물이며 그 밖에 외음부의 쓰라림, 작열감, 성교통, 배뇨시 통증같은 증상들이 있으나 특이적이지는 않음
- 75%의 여성이 일생에 한번은 칸디다 외음부질염에 걸리며 45%의 여성은 두 번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

### 1) 진단

- 외음부의 가려움증과 발적, 백색 질분비물이 있으면 임상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질염의 증상이 있으면서 질분비물의 생리식염수 도말 현미경검사 또는 그람염색 도말검사에서 균체가 발견되거나, 배양에서 균체가 동정되었을 경우에는 칸디다 외음부-질염으로 진단

## 2) 치료

- 단기간 국소제제(1회 또는 1-3일요법)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
  - 국소에 바르는 azole계 약들이 nystatin보다 효과가 있으며, azole계 약들을 써서 치료하고 나면 80-90%의 환자에서 증상이 없어지고 균배양 검사는 음전됨
  - 질내용 제제 :
    - Butoconazole 2% 크림 5g씩 3일간 질내 투입 또는
      - Butoconazole 1-sustained release 2% 크림 5g 1회 질내 투입
    - Clotrimazole 1% 크림 5g 7-14일간 질내 투입 또는
      - Clotrimazole 100mg 질정 7일간 질내 투입 또는
      - Clotrimazole 100mg 질정 두개씩 3일간 질내 투입 또는
      - Clotrimazole 500mg 질정 1회 질내 투입
    - Miconazole 2% 크림 5g 7일간 질내 투입 또는
      - Miconazole 200mg 질정 1일 1정 3일간 질내 투입
    - Nystatin 100,000-unit 질정 1일 1정 14일간 질내 투입
    - Ticonazole 6.5% 연고 5g 1회 질내 투입
    - Terconazole 0.4% 크림 5g 7일간 질내 투입 또는
      - Terconazole 0.8% 크림 5g 3일간 질내 투입 또는
      - Terconazole 80mg 질정 1일 1정 3일간 질내 투입
  - 경구용 제제 :
    - Fluconazole 150mg 1정 1회 복용
- ※ 질염으로 판정된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관리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적절히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IX. 성병감염자 치료

### 1. 일반인

#### 가. 의료급여

##### 1) 대 상

- 성병에 감염된 자로서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단,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제외)을 방문,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담률을 적용
- 제1차 의료기관인 보건기관 외래진료 시 의료급여 환자는 무료 치료

##### 2) 진료지역 및 기관

- 진료지역 및 의료기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성병진료소(보건소 관할 성병진료소, 성병간이진료소 포함)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됨

##### 3) 진료기록 관리

- 진료기록부는 진료담당의사가 진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고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보존

##### 4) 성병감염자 진료비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급여비용의 부담은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부담액 지급,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을 지급

본인일부부담금 조건표(2009.12월 현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및 보건 의료 원	외래	의약품직접조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500원	1,500원
			전산화단층촬영(CT) 등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그 밖의 외래치료	1,000원	1,000원
		입원	-	무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무료	무료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처방		무료	무료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처방		500원	500원
약국 직접 조제		900원	900원		
2차 의료 급여기관	외래	의약품직접조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00원	1,500원	
		전산화단층촬영(CT) 등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그 밖의 외래치료	1,500원	1,000	
		입원	-	무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제3차 의료급여 기관	외래	의약품직접조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500원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전산화단층촬영(CT) 등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치료	2,000원		
		입원	-		무료

- \* 1종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  
 (1) 18세 미만인 자, (2) 임신부, (3)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 제3조제2항제1호가목(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환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

## 나. 건강보험

### 1) 대 상

- 보건소 등 성병검진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  
(건강보험카드 소지한 자)

### 2) 진료지역

- 전국 의료기관

### 3) 성병감염자 진료비

- 성병에 관한 검진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절차, 자격, 검사 및 치료비 등은 일반질병과 동일

## 2.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 가. 대 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자

### 나. 진료기관

- 공공기관
  - 보건소, 보건소 관할 성병진료소, 성병간이진료소
- 일반기관
  - 대응성병진료소, 일반 의료기관

### 다. 성병감염자 진료비

#### 1) 공공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

- 검진 및 치료비는 무료로 하되, 부족 예산은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 2) 일반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

## ○ 대용성병진료소

- 성병 검진 및 치료 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무료로 실시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대용성병진료소에 내소한 본인이 부담하되 (단, 개인의 건강 등을 위한 예방 차원의 검진은 비급여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 내소한 본인이 부담), 시·도 및 시·군·구는 가능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 일반 의료기관

- 진료절차, 자격 등은 일반질병과 같으며, 검진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내소한 본인이 부담

## 3. 성병별 치료권장 지침

## 가. 매독

병명	표준처방	대체처방 (페니실린 과민반응자)
매독1기, 2기, 조기잠복기 (감염 1년 이내)	○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1회 근육 주사	○ Doxycycline 100mg 1일 2회 14일 경구 투여 또는 ○ Tetracycline 500mg 1일 4회 14일 경구 투여 또는 ○ Ceftriaxone 1g 1일 1회 8-10일 근육 또는 정맥 주사 또는 ○ Azithromycin 2g 1회 경구 투여
매독3기, 후기잠복기 (감염 1년 이후), 기간불명의 잠복기	○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3주간 주 1회 근육 주사	○ Doxycycline 100mg 1일 2회 28일 경구 투여 또는 ○ Tetracycline 500mg 1일 4회 28일 경구 투여

병명	표준처방	대체처방 (페니실린 과민반응자)
신경계 매독	○ Aqueous Penicillin G 1,800~2400만 단위 (4시간마다 300~400만 단위) 10-14일 정맥 주사  ※ 표준처방 이후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3주간 주1회 근육 주사 추가	○ Ceftriaxone 2g 1일 1회 10-14일 근육 또는 정맥 주사  * 단, ceftriaxone도 교차 과민반응이 가능하므로 투약 전에 부반응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해야 한다.
매독 임산부	○ 병기에 따라 동일하게 Penicillin을 처방  ※ 1기, 2기, 조기 잠복기 매독의 경우 1주 후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근육 주사를 1회 추가 투여 권장	탈감작 후 페니실린을 투여한다.
선천성 매독	○ Aqueous Penicillin G 5만 단위/1kg 1일 2회 (12시간마다) 7일 정맥 주사. 이후 동일 용량을 1일 3회 (8시간 마다) 3일 정맥 주사	탈감작 후 페니실린을 투여한다.

※ 페니실린 정맥주사는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

#### 나. 임질

병명	표준처방	대체처방(과민반응자)
임질 자궁경부, 요도, 직장	○ Cefixime 400mg 1회 경구 투여 또는 ○ Ceftriaxone 125mg 1회 근육 주사 또는  ※ 클라미디아 동시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중 하나를 함께 투여한다. ○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 ○ Doxycycline 100mg 1일 2회 7일 경구 투여	○ Spectinomycin 2g 1회 근육 주사
임질- 임산부	○ Cefixime 400mg 1회 경구 투여 또는 ○ Ceftriaxone 125mg 1회 근육 주사  ※ 클라미디아 동시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중 하나를 함께 투여한다. ○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 ○ Amoxicillin 500mg 1일 3회 7일 경구 투여	○ Spectinomycin 2g 1회 근육 주사

※ 약제 내성균 출현에 주의하여 내성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다.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 감염증

병명	표준 처방	대체 처방
비임균성 요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li> <li>○ Doxycycline 100mg 1일 2회 7일 경구 투여</li> <li>※ 지속성, 재발성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tronidazole 2g 1회 경구 또는</li> <li>- Tinidazole 2g 1회 경구투여 +</li> <li>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초치료로 사용 안한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ythromycin base 500mg 1일 4회 7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Ofloxacin 300mg 1일 2회 7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Levofloxacin 500mg 1일 1회 7일 경구 투여</li> </ul>
클라미디아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li> <li>○ Doxycycline 100mg 1일 2회 7일 경구 투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ythromycin base 500mg 1일 4회 7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Ofloxacin 300mg 1일 2회 7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Levofloxacin 500mg 1일 1회 7일 경구 투여</li> </ul>
클라미디아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li> <li>○ Amoxicillin 500mg 1일 3회 7일 경구 투여 또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ythromycin base 500mg 1일 4회 7일 경구 투여</li> </ul>

## 라.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병명	표준 처방
연성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li> <li>○ Ceftriaxone 250mg 1회 근육 주사 또는</li> <li>○ Ciprofloxacin 500mg 1일 2회 3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Erythromycin base 500mg 1일 3회 7일 경구 투여</li> </ul>
성기 단순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yclovir 400mg 1일 3회 7-10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Acyclovir 200mg 1일 5회 7-10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Famciclovir 250mg 1일 3회 7-10일 경구 투여 또는</li> <li>○ Valacyclovir 1g 1일 2회 7-10일 경구투여</li> </ul>
침규콘딜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dofilox 0.5용액 또는 겔 1일 3회 3일 도포 후 4일 쉬고, 4주기 시행 또는</li> <li>○ Imiquimod 5% 크림 1일 1회 자기 전, 주 3회, 16주간 도포 또는</li> <li>○ 액체질소 냉동요법 1-2주에 1회 또는</li> <li>○ Podophyllin resin 10-20% 주 1회 도포 또는</li> <li>○ Trichloroacetic acid(TCA) 80-90% 주 1회 도포(병변에만 도포할 것) 또는</li> <li>○ 외과적 절제(또는 레이저 수술 가능)</li> </ul>

\* 본 처방은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의 STD 치료지침(2006년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담당의사의 처방시 참고할 것.

## X. 기타 행정사항

### 1.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 가. 시·도지사는 본 사업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달하여야 하며 성병관리사업(제1호 서식) 및 성병감시체계운영사업(제2호 서식) 실적을 매분기 및 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단, 성병감시체계운영사업 실적은 사업추진 보건소의 원자료 첨부)
- 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와 임부에 대한 혈청검사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 검진실적 및 감염자 등을 파악가능토록 관리
- 다. 성병관리 사업을 위한 성병검사시약 사용량 및 재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품수급관리에 철저

### 2. 성병진단시약 및 기자재

- 가. 성병감염자 발견을 위한 시약 및 기자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며, 구입할 시약은 장비와의 호환성 및 동일 시·군내 또는 타 시·도 간의 전배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

### 3. 일선 보건소 현지 확인 및 지도감독

- 가. 시·도에서는 보건소 등에 현지 출장을 통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관리 대책 수립과 검진실적, 감염자치료, 검사시약의 관리, 법규 해석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성병관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나. 검사업무에 대한 정도관리(년 1회 실시)

- 질병관리본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사능력 정도관리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시·군·구 보건소 검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정도관리

#### 4. 검진기피자 단속

- 가. 『전염병예방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피할 때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케 할 수 없음
- 나. 위생부서와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검진주기 이행 상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 강화
- 다. 업무 형편상 위생부서 및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성병전과가 우려되는 취약업소 등을 방문 점검하여 검진 불이행자에 대한 검진을 유도하고 성병에 감염된 자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적극 계도 홍보
- 라. 성병검진기피자 및 검진 불이행자를 고용한 업주에게는 『전염병예방법』 제56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처벌조항을 주지시키고 고의적으로 계속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수사 고발하여 경각심 부여

#### 5. 검진 및 감염자에 대한 보호

- 가. 성병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검진 및 치료에 조금이라도 불친절하면 검진 및 치료에 응하는 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 나. 특히,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단·치료과정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철저
- 다. 감염자에 대한 치료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지도할 것이며, 배우자도 동시에 치료받도록 유도함은 물론 감염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건강진단규칙』 제5조 등에 의한 조치를 취함



## 서식

<제1호 서식> 성병관리사업실적표 및 작성 요령 / 63

<제2호 서식> 성병감시체계운영사업 실적대장 및 작성요령 / 66



<제1호 서식> 성병관리사업실적표 및 작성요령

구 분		대 상 별	합 계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수시건강진단 대상자	일반 관리자	검진 희망자
				① 정신보건법령 제24조항에 따른 영국의 여성유관	② 유접객원	③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수시건강진단대상자	⑥ 일반관리자	⑦ 검진희망자 (①-⑥이외의자)
① 분기건강진단실적	③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⑦ 소 계								
		⑧ HIV								
		⑨ 매 독								
		⑩ 임 질								
		⑪ 연성하감								
		⑫ 비인성모염								
		⑬ 클라미디아증								
	⑭ 기 타									
	④ 정기건강진단	⑮ 장티푸스								
		⑯ 폐 결 핵								
⑰ 피부질환										
② 성 병 관 리	⑤ 감염자수	⑮ 소 계								
		⑮ 매 독								
		⑮ 임 질								
		⑮ 연성하감								
		⑮ 비인성모염								
		⑮ 클라미디아증								
		⑮ 기 타								
	⑥ 치료자수	⑮ 소 계								
		⑮ 매 독								
		⑮ 임 질								
		⑮ 연성하감								
		⑮ 비인성모염								
		⑮ 클라미디아증								
		⑮ 기 타								

## 가. 보고자 및 보고기일

- 건강진단을 실시한 성병전담진료기관의 매분기 성병관리사업실적은 본 서식에 기재하여 분기 익월 5일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며, 보건소장은 당해 보건소의 실적과 성병전담진료 기관의 실적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분기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이즈·결핵관리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표 두

-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③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
  - ④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수시건강진단대상자 : 위생분야종사등의건강진단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상자(예, 교도소 수용자 등)
  - ⑥ 일반관리자 : 2010년 성병관리지침 27쪽의 헌혈자, 임산부
  - ⑦ 검진희망자 : ① ~ ⑥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성인 및 노인 등 검진대상자
- ※ 대상을 검진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관계법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것.

## 다. 표 측

- 기재요령 : 각항의 내용을 표두의 대상별로 구분 기재한다.
- ⑦ 소 계 : ⑧+⑨+⑩+⑪+⑫+⑬+⑭의 수치합계를 기재
- ⑧~⑭ 매독, 임질, HIV등 [별표1]에 의한 대상자별 진단항목 주기에 따라 실시한 건수를 기재
- ⑮~⑰ 장티푸스, 결핵, 전염병피부질환 : 일반건강진단항목(1년마다 실시)에 대한 건강진단건수를 기재
- ⑱ 소 계 : ⑲+⑳+㉑+㉒+㉓+㉔의 수치합계를 기재
- ⑲ 매독~㉔ 기타 : 분기중 검사결과 성병의 병명에 따라 감염자를 해당란에 기재
- ㉔ 기 타 :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등 기타 성병감염자수를 기재
- ㉕ 소 계 : ㉖+㉗+㉘+㉙+㉚+㉛의 수치합계를 기재
- ㉗ 임질~㉛ 기타 : 분기중에 치료한 성병감염자를 병명에 따라 해당란에 기재

<제2호 서식> 특수취약지역 대상 성병감시체계운영사업 실적 대상 및 작성요령

**성병감시체계운영사업 실적 대상**

구분	①매독			②임질			③클라미디아증			④HIV			⑤교육·홍보			
	검진	감염	치료	검진	감염	치료	검진	감염	치료	검진	양성(확진)	소요예산(천원)	교육(회수)	홍보		회의·간담회(건수)
														홍보물	수량	
계																
영산포면(형사·민사·가정·소년·소년부·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장·소년소녀가장)회(또는 영산면 지역주민)																
유홍전의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⑥( )	해당없음															

연락처 TEL : FAX :  
 시·도 보건소

년도 분기

※ 작성요령  
 ①②③ : 각 대상자별 진단항목 주기에 따라 실시한 검진 건수를 기재하고, 분기 중 검사결과와 상병의 병명에 따라 감염진수 및 치료진수를 기재  
 ④ : 각 대상자별 HIV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한 검진 건수를 기재하고, 분기 중 검사결과에 따른 양성(확진률) 건수를 기재  
 ⑤ : 분기 중 교육·홍보에 투입된 예산 및 대상자별 교육 횟수·홍보(물) 수량 등을 기재 (시·도 또는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추진된 실적을 기재)  
 ⑥ :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외(예, 동업자 단체 등) 교육·홍보 및 회의(간담회) 등을 실시한 대상자를 괄호 안에 기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해당란에 작성  
 ◆ 항목별 검진건수 및 검사결과 기재 시 반드시 매분기 말까지의 실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부 록

1.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69
2. 관련법령 / 75
3. 성병진료기록부 / 84
4. 건강진단항목에 따른 검사료 및 건강보험 수가기준액표 / 86
5.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등 / 87



## 1. 위생분야중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정 1984. 9. 8 보건사회부령 제754호  
 개정 1988. 7. 4 보건사회부령 제820호  
 개정 1993. 7. 27 보건사회부령 제912호  
 개정 1996. 8. 20 보건복지부령 제 32호(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 1998. 1. 10 보건복지부령 제 58호  
 개정 1999. 5. 29 보건복지부령 제114호  
 개정 2001. 6. 21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개정 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00254호  
 개정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7.4, 1996.8.20, 1999.5.29, 2001.6.21, 2009.8.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7.4, 1993.7.27, 1998.1.10, 2001.6.21>

1. 이 규칙에서 성병이란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2. 삭제 <2009.8.12>
3. 삭제 <2001.6.21>
4. 삭제 <2001.6.21>
5. 삭제 <2001.6.21>
6. 삭제 <1998.1.10>
7. 삭제 <2001.6.21>
8. 삭제 <2001.6.21>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개정 2009.8.12 >)**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2>

**제4조(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8.20, 1999.5.29, 2009.8.12>  
[전문개정 1988.7.4]

**제5조(수시건강진단)**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전염병 예방법 제 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0, 2001.6.21, 2009.8.12>  
②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전염병의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12>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9.5.29]

**제7조(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개정 2001.6.21>)**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2>  
[전문개정 1999.5.29]

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4, 1998.1.10, 2009.8.12>

부 칙 <제754호, 1984.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병검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건강진단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①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③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안마사, 때밀이, 터키탕의 입욕보조자에 대하여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부 칙 <제820호, 198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12호, 1993.7.27>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2호, 199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의 개정)**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제2호 가목(10)”을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별표 3]제2호 가목(10)”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6.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터키탕의 입욕 보조자란을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 칙 <제58호, 1998.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건강진단수첩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14호, 1999.5.29>**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조 및 별표 2의 대상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5호, 20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중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위생분야중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 칙(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54호, 2003.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생분야중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상란중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9.8.12>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횟수(제3조관련)**

성병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1주

[별표 2] <개정 2001. 6.21, 2003. 8.18, 2009. 8.12>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제4조관련)**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 2. 관계법령

### 가.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p>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p> <p>가-다. &lt;생략&gt; 라. 성병 마-러. &lt;이하 생략&gt;</p>	
<p><b>제8조</b>(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p><b>제9조</b>(건강진단 등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 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76·12·31, 83·12·20, 97·12·13 법5454, 99·2·8,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p><b>제4조</b>(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3, 99·8·28, 2000·10·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li> <li>2. 전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li> <li>3. 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li> </ol> <p>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진단(예방접종)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0·10·5]</p>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p><b>제25조</b>(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응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08.06.][전문개정 83.12.20]</p>	<p><b>제14조</b>(공·사립의료기관 등의 격리소·진료소로의 대응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격리소등대용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00.10.5, 2006.1.17]</p>
<p><b>제30조</b>(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2.29.], [신설 83.12.20]</p>	<p><b>제17조</b>(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 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28, 2000.10.5, 2006.1.17]                  1.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홍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전문개정 94.9.12]</p>
<p><b>제55조</b>(벌칙) ① &lt; 생략 &gt;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3.12.27, 1999.2.8, 2005.7.13]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7. &lt; 생략 &gt;</p>	
<p><b>제56조</b>(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86.5.10, 1999.2.8]                  1-5. &lt; 생략 &gt;                  6.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8. &lt; 생략 &gt;                  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lt; 생략 &gt;</p>	

## 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p><b>제40조(건강진단)</b> ①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8.2.29, 2009.8.12]</p> <p>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2009.8.12]</p>	
	<p><b>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b> ①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2003.8.18, 2009.8.12]</p> <p>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2]</p>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3.11, 1992.12.21, 1994.4.30, 1994.12.23, 1994.12.31, 1995.5.1, 1996.10.14, 1998.6.20, 1999.11.13, 2000.7.27, 2003.4.22, 2005.7.27, 2007.12.13, 2008.2.29, 시행 2009.11.28 제21847호]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향아리, 뚜껑 등을 제조하는 영업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p><b>제6조</b>(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①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생략</p> <p><b>제7조</b>(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li> <li>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li> <li>3.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li> <li>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li> <li>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li> <li>6.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내부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li> <li>7.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안마사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li> <li>8. 그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3.09.16.]</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 &lt;신설 2003.9.16, 2004.12.30&gt;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제6조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마시술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li> <li>나.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안마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li> <li>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10명 이하로 하고, 안마사를 안내하는 9종업원은 안마사 수의 2분의 1로 한다.</li> </ol> </li> <li>2. 안마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lt; 생략 &gt;</li> <li>나. 안마원의 내부에는 남녀 피술자(被術者)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칸막이외에 별도의 안마실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외부에는 안마원의 명칭외에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보조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다.</li> <li>다.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은 2인 이하로 한다.</li> </ol> </li> </ol>

## 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p><b>제8조(검진)</b>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li> <li>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p> <p>④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p> <p>⑤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p>	<p><b>제10조(검진대상자)</b>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진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10조(검진대상자) 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한다.</p> <p>②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li> <li>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p>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p><b>제8조(검진)</b>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li> <li>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p> <p>④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p> <p>⑤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p>	<p><b>제10조(검진대상자)</b>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진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10조(검진대상자) 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한다.</p> <p>②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li> <li>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③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p>

## 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8.25, 2001.10.20>

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3. 성병진료기록부

No. (전면)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결혼관계 1.미혼 2.기혼	직업
거주지					발병년월일
주요증상 및 병력(페니실린 기왕력 등)					
성병감염력 1. 없음 2. 있음 ( 회) 성병종류( ) 감염시기( )			감염원: 1. 배우자 2. 연인 3. 윤락여성 4. 그외 비정기상대자 5. 기타( )		
지난 1년간 윤락여성과의 성관계 1. 없음 2. 있음 ( 회) 콘돔사용: 1. 함 2. 안함 3. 모름			가장 최근의 성관계에서 콘돔사용 1. 사용함 2. 사용안함		
진단명 1. 매독(임상_____기)    2. 임질    3. 연성하감    4. 비임균성요도염 5. 클라미디아증    6. 기타( )					
가검물 : 1. 뇨    2. 농    3. 분비물    4. 혈청    5. 기타					
<input type="checkbox"/> 도말 ( ) :			<input type="checkbox"/> VDRL(정성, 정량) 검사:		
<input type="checkbox"/> 배양검사 :			<input type="checkbox"/> RPR(정성, 정량) 검사:		
<input type="checkbox"/> Oxidase test : 양성·음성			<input type="checkbox"/> TPHA 검사:		
<input type="checkbox"/> 당분해능검사 :			<input type="checkbox"/> FTA-ABS 검사:		
<input type="checkbox"/> PPNG 검사 : 양성·음성			<input type="checkbox"/> HIV :		
<input type="checkbox"/> 클라미디아 : 양성·음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페니실린 과민반응 검사소견					
1. 검사명 피부반응		2. 검사결과 양성, 음성		1. 검사명 결과반응    2. 검사결과 양성, 음성	
특기사항(약제부작용시의 처치등)				진료기관명 진료의사명	



#### 4. 건강진단항목에 따른 검사료 및 건강보험 수가기준액표

##### 가. 검사료(보건기관 기준)

(2009. 1월 1일 적용)

구 분	진단항목	검 사 방 법	건강보험 수가(원)	비 고
1. 성병에 관련 건강진단	임질검사 혈청검사	○미생물현미경검사 (일반염색)-그람염색	1,270	
		○미생물간이배양검사	3,530	
		○매독반응검사 [VDRL, RPR, ART]	1,120	
		○매독감작혈구응집 [TPHA]	5,230	
		○미생물현미경검사 [형광법, 암시야법]	3,130	
		○형광트레포네마항체흡수검사/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등판독	9,840	

나.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항목의 건강보험수가는 현행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다. 일반 정기건강진단 항목의 건강보험수가는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  
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 5. 관련기관 주소 및 연락처 등

###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통일로 194번지)

☎ (02) 380-2915, FAX (02) 380-1418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과

직 위	성 명	담 당	전화	e-mail 주소
팀 장	유병희	총괄	2901	-
책임연구원	손현진	성병·에이즈 총괄	2911	hjson@cdc.go.kr
보건연구사	황지영	성병·에이즈 담당	2912	joshua51@korea.kr
보 건 서 기	허미경	에이즈	2909	hmk0871@korea.kr
전문연구원	김미정	성병	2915	kmj1109@korea.kr
전문연구원	이미영	에이즈 민간단체사업	2909	dignya@yahoo.co.kr
전문연구원	박수진	에이즈 민간단체사업	2910	skysj003@korea.kr
전문연구원	최지현	에이즈 정보화 사업관리	2912	cutcheese@hanmail.net
전문연구원	구자현	교육·홍보	2906	kjh999@cdc.go.kr

나. 시·도 성병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FAX	주 소
시·도	과				
서울	보건정책담당관	양맹렬	02-3707-9288	02-3707-9148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45
부산	보건위생과	강대신	051-888-2855	051-888-28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대구	보건과	김민지	053-803-6287	053-803-2999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인천	보건정책과	최선희	032-440-2743	032-440-86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광주	건강증진과	문정수	062-613-4375	062-613-4369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
대전	보건정책과	정선미	042-600-2534	042-600-253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111
울산	보건위생과	이종순	052-229-3563	052-229-3519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585-9
경기	보건정책과	변영은	031-249-4382	031-249-242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강원	보건위생과	이효순	033-249-2437	033-249-4038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충북	보건위생과	이경아	043-220-4563	043-220-45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문화동)
충남	보건행정과	이종천	042-251-2965	042-251-242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전북	보건위생과	김연화	063-280-2435	063-280-243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3가 1번지
전남	보건한방과	이남희	061-286-6041	061-286-477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경북	보건정책과	정영규	053-950-2422	053-950-2799	대구광역시 북구 산적동 1445-3
경남	보건행정과	강판상	055-211-5166	055-211-5159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번지
제주	보건위생과	오경수	064-710-2937	064-710-29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 다. 보건소 담당자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서울	강남구	문제기	02-3451-2561	서울 강남구 삼성동 66
	강동구	정효진	02-2224-0827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1-2
	강북구	이성경	02-901-0732	서울 강북구 번2동 232
	강서구	정주현	02-2600-5881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5-12
		이경자	02-2600-5909	
	관악구	김효심	02-881-5572	서울 관악구 청룡동 1571-4
	광진구	배명희	02-450-1585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7
	구로구	김형순	02-860-2436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9-4
	금천구	정광자	02-2627-2214	서울 금천구 독산1동 289-5
	노원구	진현정	02-950-4079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01-1
	도봉구	정순임	02-2289-8444	서울 도봉구 쌍문2동 565
		윤선영	02-2289-8441	
	동대문구	박정임	02-2127-5261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9
	동작구	김은미	02-820-9488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76-3
	마포구	허수영	02-3153-9097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
	서대문구	배경선	02-330-8916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165-2
	서초구	정봉옥	02-2155-809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3
		윤진규	02-2155-8095	
	성동구	유성희	02-2286-7038	서울 성동구 홍익동 16-1
	성북구	류현아	02-920-1935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6-1
	송파구	신숙례	02-2147-3491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양천구	김강욱	02-2620-3892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5	
영등포구	김은숙	02-2670-490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용산구	황영하	02-710-3428	서울 용산구 원효1가 25	
은평구	지혜숙	02-351-8215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부산	중구	김창용	051-441-4000	부산 중구 대청동1가 1
	서구	이동근	051-242-4000	부산 서구 부용동2가 86
	동구	이은주	051-464-4000	부산 동구 수정2동 806-77
	영도구	손진현	051-416-4000	부산 영도구 청학2동 48-3
	부산진구	백기전	051-645-4000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9-10
	동래구	김경옥	051-555-4000	부산 동래구 명륜1동 641-5
	수영구	허점애	051-752-4000	부산 수영구 광안1동 661-1
	사상구	박병규	051-310-4791	부산 사상구 감전2동 138-8
	해운대구	한명화	051-746-4000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39
	사하구	김용수	051-291-5804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47-5
	금정구	양미경	051-513-9501	부산 금정구 부곡3동 78
	강서구	김미정	051-972-6101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009-1
	기장군	김미정	051-721-2607	부산 기장군 기장을 신천리 1
	남구	이 규	051-637-4000	부산 남구 대연6동 1268-3
	북구	문건호	051-341-0117	부산 북구 화명동 1531-4
연제구	이조환	051-665-4816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22-7	
대구	중구	신동선	053-661-3832	대구 중구 태평3가 174-1(태평로 390)
	동구	윤희영	053-662-3224	대구 동구 검사동 1005-8(안심로 131)
	서구	배정대	053-663-3134	대구 서구 평리3동 1230-9 (국채보상로 1162)
	남구	류신욱	053-664-3667	대구 남구 대명5동 1699-19(대명로 152)
	북구	박희재	053-665-3232	대구 북구 침산3동 521-2(성북로 59)
	수성구	김상무	053-666-3133	대구 수성구 중동 266-5(수성로 228)
	달서구	하선화	053-667-3124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1(학산로 300)
	달성군	송말녀	053-668-3093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93-1 (현풍시장길 11)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인천	중구	안주이	032-760-6053	인천 중구 전동 21
	동구	유영숙	032-770-5721	인천 동구 만석동18-3
	남구	이은란	032-870-3512	인천 남구 도화1동 357-1
	연수구	윤형준	032-810-7841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함박피길 13호
	남동구	임문심	032-453-5092	인천 남동구 만수동1008
	부평구	정순임	032-509-8261	인천 부평구 부평4동 442-1
	계양구	김덕순	032-450-4992	인천 계양구 계산3동1079-1
	서구	장예현	032-560-5036	인천 서구 심곡동 246-1
	강화군	전기순	032-930-4021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24-1
	옹진군	정이선	032-899-3143	인천 남구 용현동 627-608
광주	광산구	이강용	062-940-9881	광주 광산구 송정동 833-8
	북구	조일두	062-410-5989	광주 북구 용봉동 239-2
	동구	조선희	062-608-2756	광주 동구 서석동 31번지
	서구	조승용	062-350-4704	광주 서구 농성1동 269-6
	남구	박순옥	062-650-8415	광주 남구 봉선동 516
대전	대덕구	복영옥	042-608-5463	대전 대덕구 석봉동318-1
	동구	이재은	042-629-1122	대전 동구 삼성2동 374-1
	서구	전현수	042-611-5333	대전 서구 만년동 340
	유성구	임현수	042-611-5043	대전 유성구 장대동 282-15
	중구	황연화	042-580-2760	대전 중구 문화동 785
울산	중구	김영자	052-211-4000	울산 중구 남외동 603-2
	남구	임춘영	052-226-2421	울산 남구 삼산동 1538-4
	동구	조노미	052-209-4093	울산 동구 화정동 222
	북구	강영숙	052-289-3451	울산 북구 연암동 1082
	울주군	김금숙	052-229-8043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1605-1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경기	가평군	박기화	031-580-2847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3리 624-1
	고양시(덕양구)	강영호	031-8075-4056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시청로10 (주교동 600번지)
	고양시(일산동구)	김기원	031-8075-413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중앙로582
	고양시(일산서구)	이효숙	031-961-256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42-26
	과천시	김재훈	02-3677-2558	경기 과천시 관문로 72
	광명시	최정수	02-2680-2896	경기 광명시 오리로 128(하안1동 230-1)
	광주시	한진숙	031-760-2359	경기 광주시 경안동 115
	구리시	이홍녀	031-550-8682	경기 구리시 장미2길 28호(인창동 674-3)
	군포시	이숙진	031-390-8830	경기 군포시 군포로 632(부곡동 770-1)
	김포시	심인섭	031-980-5038	경기 김포시 풍년로 26
	남양주시	전미숙	031-590-4453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641
	동두천시	최성희	031-860-2557	경기 동두천시생연동714-9(중앙로길 139)
	부천시(소사구)	지희순	032-625-437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64
	부천시(오정구)	박정란	032-625-446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9
	부천시	김경희	032-625-42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19
	성남시(분당구)	나선희	031-729-398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우로 160
	성남시(수정구)	임복남	031-729-386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음촌로51(산성동 2177)
	성남시(중원구)	함현숙	031-729-392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선경길14 (상대원1동 279-7)
	수원시(권선구)	최향란	031-228-6668	경기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2길 10 (탑동910)
	수원시(영통구)	김은영	031-228-88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광장길37 (영통동961-17)
수원시(장안구)	김범수	031-228-5654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일타운길 25번지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경기	수원시(팔달구)	신명숙	031-228-7655	경기 수원시 권선구 남부터미널1길 29
	시흥시	박효진	031-310-5823	경기 시흥시 대야동 484-3
	용인시(처인구)	김영애	031-324-4942	경기 용인시 용인대로 735
	의왕시	배미정	031-345-2553	경기 의왕시 고천동 108
	의정부시	김소윤	031-828-455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만남길 37
	이천시	홍승숙	031-644-4021	경기 이천시 긴고갯길 23
	파주시	박치숙	031-940-2571	경기 파주시 무내미 2길 61
	평택시(송탄)	유용국	031-610-8555	경기 평택시 신장동 191-1
	평택시(평택)	서동화	031-659-4717	경기 평택시 비전동 850
	포천시	장선순	031-538-2555	경기 포천시 신읍동 164-1
	하남시	서명순	031-790-6554	경기 하남시 시청길 2
	화성시	남영희	031-369-3570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139-6
강원	춘천시	이윤승	033-242-4000	강원 춘천시 중앙로3가 67-1
	원주시	강태규	033-764-3887	강원 원주시 일산동 211
	강릉시	신금자	033-640-4417	강원 강릉시 내곡동 413
	동해시	손숙희	033-532-4000	강원 동해시 천곡동 840
	태백시	이찬주	033-550-2711	강원 태백시 황지동 20-8
	속초시	홍춘화	033-631-4000	강원 속초시 교동 980
	삼척시	홍영희	33-573-2003	강원 삼척시 남양동 6-1
	홍천군	최금옥	033-434-240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횡성군	이장호	033-340-2549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7-13
	영월군	김하령	033-372-4000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36-2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강원	평창군	송 하 자	033-332-4000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4
	정선군	서 미 자	033-563-0034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5리 30-5
	철원군	이 경 옥	033-450-5550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60-2
	화천군	전 정 숙	033-442-4424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48-1
	양구군	강 영 자	033-480-2550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315
	인제군	허 명 희	033-461-2425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789-1
	고성군	박 금 주	033-681-4000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78
	양양군	고 석 선	033-671-8733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5
충북	청주시 상당	이승훈	043-200-4040	청주시 상당구 보건로 25(수동 138-14)
	청주시 흥덕	이동희	043-200-4137	청주시 흥덕구 사직로 280(지하 1층)
	충주시	김용현	043-850-3434	충주시 으뜸로 40(금능동 700)
	제천시	정현숙	043-641-4082	제천시 의립대로 436(청전동 110)
	청원군	최병우	043-251-4137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5(지북동 208)
	보은군	김귀태	043-540-3533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91-3
	옥천군	홍진숙	043-730-2161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45
	영동군	이은미	043-740-5595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4-1
	증평군	김옥순	043-835-4224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7(보건복지타운내)
	진천군	김순화	043-539-4046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70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충북	괴산군	김기중	043-830-266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41
	음성군	이은숙	043-871-2412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06-4
	단양군	장덕기	043-420-3782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11
충남	당진군	이경희	041-350-4071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217
	금산군	김성임	041-750-4328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4
	논산시	이계순	041-735-7768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관촉동)
	홍성군	유미선	041-630-90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62-3
	연기군	홍환기	041-861-2687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9-1
	예산군	신현승	041-339-804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3-1
	부여군	유관숙	041-830-2483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37-2
	천안시	노정숙	041-521-5964	충남 천안시 불당동 234-1
	서천군	구성례	041-950-568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799
	아산시	최원경	041-537-3411	충남 아산시 모종동 573-2
	보령시	최상예	041-930-9025	충남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37-4
	공주시	신동자	041-840-2563	충남 공주시 신관동 571-8
	서산시	이세창	041-661-6521	충남 서산시 석림동 581-1
	계룡시	박윤정	042-840-3523	충남 계룡시 금암동 10
	청양군	박경자	041-940-426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1-1
	태안군	김경숙	041-671-5263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698-6
전북	고창군	김은주	063-560-3807	전북 고창군 고창읍 울계리 101
	군산시	신양숙	063-460-3261	전북 군산시 나운동 153-8
	김제시	신미경	063-540-1349	전북 김제시 요촌동 423-9
	남원시	지민기	063-620-7938	전북 남원시 조산동 455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전북	무주군	전영수	063-320-8640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01
	부안군	최영신	063-584-1261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51-2
	순창군	권경자	063-650-5213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541-1
	완주군	이연정	063-291-31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16-6
	익산시	전애실	063-859-4218	전북 익산시 신동 142-8
	임실군	박정애	063-640-3125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70-8
	장수군	박경임	063-350-3109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25
	전주시	강정임	063-230-524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30-1
	정읍시	최은경	063-539-6117	전북 정읍시 수성동 958-2
	진안군	이상득	063-430-8542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0-3
경북	포항시(남구)	김경미	054-270-6974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
	포항시(북구)	한석희	054-240-7974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3
	경주시	김순래	054-779-6474	경북 경주시 동천동 987
	김천시	윤정은	054-420-6472	경북 김천시 신음동 1284
	안동시	김선자	054-855-5978	경북 안동시 북문동 58
	구미시	손춘애	054-450-5702	경북 구미시 지산동 853-12
	구미시 선산	강영수	054-481-6398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4-1
	영주시	안송희	054-639-6475	경북 영주시 휴천2동 466-6
	영천시	손월순	054-330-6702	경북 영천시 문내동 152-1
	상주시	김미선	054-537-8766	경북 상주시 무양동 33-4
문경시	채미경	054-550-6476	경북 문경시 점촌동 232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경북	경산시	오선자	053-810-6473	경북 경산시 중방동 708-5
	군위군	박성호	054-380-6464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57
	의성군	오성수	054-833-6472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04-1
	청송군보건의료원	서태환	054-870-7191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54
	영양군	김필자	054-680-6472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92-4
	영덕군	송병욱	054-730-6842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08-1
	청도군	박은향	054-370-2647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96
	고령군	박후남	054-950-6472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63-3
	성주군	이임훈	054-930-6473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36-1
	칠곡군	김정숙	054-979-647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62-1
경남	진해시	주미송	055-548-4540	경남 진해시 시청로 1
	고성군	박영선	055-670-2704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4
	사천시	김희정	055-831-3620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하동군	김현중	055-880-2645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
	의령군	우성희	055-570-404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 843-2
	김해시	류말숙	055-330-4521	경남 김해시 외동 1261-3
	마산시	최인옥	055-220-5582	경남 마산시 보건소길 22
	진주시	성환철	055-749-4980	경남 진주시 남성동 3-18
	창원시	이형철	055-212-4095	경남 창원시 신월동 96-2
	창녕군	박은미	055-530-2551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71-2
	양산시	이우수	055-392-5160	경남 양산시 중부동 707-2
	함양군	하홍석	055-960-4688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30-3
	거창군	최정석	055-940-35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1
	합천군	최은재	055-930-3683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51

지역	보건소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경남	남해군	최미선	055-860-8767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58-2
	밀양시	김귀연	055-359-7041	경남 밀양시 삼문동 159-1
	거제시	송정희	055-639-3850	경남 거제시 중통로 33
	통영시	민영진	055-650-6174	경남 통영시 안개4길 126
	함안군	조수현	055-580-3207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00
	산청군	이진옥	055-970-753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179-7
제주	제주보건소	고맹숙	064-750-4181	제주시 도남동 1038 (연삼로 274)
	동부보건소	신애순	064-728-8772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811
	서부보건소	이영실	064-728-8743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66-1
	서귀포보건소	한명숙	064-733-4000	서귀포시 서홍동 447-3번지
	서귀포동부보건소	송정숙	064-760-613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59-1
	서귀포서부보건소	김 경 환	064-760-6231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62-1

## 2010 성병관리지침

---

인쇄일 : 2009년12월

발행처 : 질병관리본부

제작처 : 이문기업

---

PHWR Vol 3 GL2010008/ ISSN: 2093-1212